

# 미국의 언론법제 교육현황

- 현장 지식 제공 및 참여하는 민주시민  
양성 목표, 이해와 적용 중심으로 교육 -

김민정

하와이 퍼시픽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 조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석사
- MI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저널리즘 및 매스커뮤니케이션 대학 석·박사
- 현(現) 하와이 퍼시픽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 조교수 및 대학원 주임교수
- 논문 및 저서: 『Numbers tell part of the story: A comparison of FOIA implementation under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외 다수

## 1. 서론

미국 언론법제 교육의 기원은 염규호 교수가 『언론중재』에 기고한 논문에서 상세히 밝혔듯이 1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펜실베니아대 비즈니스 대학(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1893~1894년 교과과정에는 명예훼손법(Law of Libel)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미국 최초로 저널리즘 대학(School of Journalism)을 설립한 미주리 대학(University of Missouri)은 1908년 신문법(Newspaper Jurisprudence) 과목을 개설(염규호, 1998) 하였는데 이 과목은 주로 명예훼손법과 우편물에 관한 연방규제(federal mail regulations)를 다루었다고 한다(Henderson, 2006). 이후 미국의 언론법제 교육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였는데 그 발달 단계는 크게 네 시기 -고전기(the Traditional: 1904~1930), 과도기(the

Transitional: 1931~1943), 성장기(the Developmental: 1944~1968) 그리고 현대(the Contemporary: 1969~지금) - 로 나눌 수 있다(Marler, 1990).

현재 미국 언론학(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교육<sup>1)</sup>에 있어서 언론법제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언론학과 인가 심의위원회(The Accrediting Council on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 이하 “ACEJMC”라 지칭)의 인가 기준 2번째 항목인 교과과정 및 교수법(Curriculum and Instruction)은 언론학과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표현과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press)에 관련된 원칙(principles)과 법(laws)을 이해(understand)하고 적용(apply)하는 능력이 그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ACEJMC, 2005). 즉, 언론학과의 교과과정 및 교수법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권리

1)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영역이 확대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같은 커뮤니케이션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디지털 영상학과 등등 학교들마다 이름도 다르고 중점을 두는 분야도 다르다. 미국에서도 저널리즘과 광고홍보를 포함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 중심의 학과들이 있고 정보통신에 초점을 맞추는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s) 중심의 학과들 그리고 수사학, 대인 커뮤니케이션, 문화연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studies) 학과 등등이 있는데, 이 글에서 “언론학”이라 함은 저널리즘 및 매스커뮤니케이션(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분야에 초점을 맞춘 언론학을 의미하며, 이 글 전체는 저널리즘 및 매스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쓰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들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학생들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법제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해와 지식이 학생들이 실제로 해당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CEJMC의 인가를 받은 미국 내 104개 언론학과들은 언론법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ACEJMC의 인가를 받지 않은 언론학과들 역시 교육부, 지역별 교육 평가위원회, 대학 내 평가위원회 등의 교육평가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언론법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Henderson, 2006). 일례로 필자가 대학원 교육을 받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저널리즘 및 매스 커뮤니케이션 단과 대학(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은 학부생과 석·박사 과정생 모두에게 세부전공과 상관없이 언론법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필자가 언론법제를 강의하고 있는 하와이 퍼시픽 대학(Hawaii Pacific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 단과대학(College of Communication)은 언론법제 과목을 학부생에게는 선택과목으로 석사 과정생에게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글은 우선 미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본 후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을 위한 언론법제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에 대해서는 먼저 언론법제 교육의 목표 및 주제 그리고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본 뒤, 언론법제 전공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론법제 분야의 연구 활동은 어떠한 지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 2. 미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

### 1) 언론법제 교육의 목표 및 주제

언론법제 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언론학과 졸업생들이 전문 언론인(a professional communicator)으로서 현장에서 일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식(working knowledge)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현장을 취재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고 문구를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기만광고 금지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취재 정보원에게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차후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되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목표로 언론학과 졸업생들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참여하는 시민(engaged citizen)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언론법제 교육을 통해 자유와 책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언론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문제의식을 가지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절감함과 동시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다른 중요 가치들과의 갈등양상에 대해 심사숙고 해 봄으로써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cultivation of critical thinking skills)해 궁극적으로는 민주사회의 참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법제 교육의 목표라 하겠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법제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우

미국 대학의 언론법제 교육목표는  
언론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전수 및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것

선은 법의 출처(sources of law)와 연방 및 주 법원의 체계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기본 배경지식을 제공해야 하고, 수정헌법 1조의 역사, 관련 이론들, 주요 개념들을 소개함으로써 기본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특히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자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억제(prior restraint)와 사후처벌(subsequent punishment)의 차이, 표현 내용에 근거한 규제(content-based restriction)와 표현내용과는 상관없이 시간, 장소, 방식만을 규제하는 표현중립적인 규제(content-neutral restriction: time, place, manner restriction)의 차이, 상징을 통한 표현(symbolic speech) 및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를 담은 표현(hate speech)에 대한 규제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학생 언론(student press), 명예훼손법, 프라이버시 관련법, 뉴스 취재 시 장소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places), 정부 문서 및 정부 회의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government records and meetings), 재판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courts), 취재 정보원 익명성 보장(confidential sources) 등 기자특권(reporter's privilege)에 관한 법, 재판 관련 보도의 쟁점(free press/fair trial)들을 다루게 되고, 저작권법(copyright) 및 상표권법(trademark),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송 및 통신에 관한 규제(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에 관한 규제, 기업체 및 법인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corporate speech)에 관한 규제 및 선거관련(campaign speech) 규제, 음란물 규제 등을 주제별로 다루게 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한 학기 안에

모두 소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강의계획서에서 내세운 주제들을 모두 다루지 못하고 한 학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어떤 주제들은 아주 간략하게 다룬 후 넘어가게 된다. 게다가 한 학기 동안 언론법제의 모든 부분을 소화하는 일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첫째로는 학생들의 전공분야가 날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어 각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야만 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및 저작권 보호 등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각종 규제기관들(연방통신위원회, 연방통상위원회, 연방의약청)의 규제사항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언론법제 과목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양이 날이 갈수록 방대해지고 있으며, 셋째로 강의(lecture) 위주의 수업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강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요구되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Ekstrand, 2007).

그리하여 사실상 한 학기 동안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칠 것인가는 해당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의 재량 및 선택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된다. 필자가 언론법제 공부를 한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는 언론법제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가 세 명이 있는데 그 중 두 사람은 신문기자 출신인 자신들의 경력 및 초창기 언론법제 학풍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언론법의 주제들, 특히 명예훼손법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신입교수이자 변호사 출신인 나머지 한 명의 교수는 광고 및 상업 관련 표현(commercial speech)을 중심으로 강의를 한다. 필자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 및 저작권에 관심이 많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 및 저작권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강의를 하곤 한다.

전공별 학생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또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세부전공에 따라 언론법제 과목 내에서 내용에 차별화를 둔 과목들을 개설,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다. 일례로 시라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의 경우 10년이 넘게 세 가지 종류의 언론법제 과목들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첫째는 인쇄 및 방송매체 저널리즘 전공자들을 위한 언론법제(Communications Law for Journalists), 둘째는 광고 및 PR 전공자들을 위한 언론법제(Communications Law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그리고 셋째는 텔레비전과 영화 제작 전공자들을 위한 언론법제(Communications Law for Television, Radio, Film)이다. 시라큐스 대학에서 언론법제를 다년간 강의하고 있는 제이 라이트(Jay Wright) 교수는 현재 시라큐스 대학은 전반적인 교과과정을 재정비하고 있는 중이지만 세 가지 종류의 언론법제 과목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세부 전공 및 세분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언론법제 과목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J. Wright,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5, 2007).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역시 2년여 전부터 저널리즘 전공자들을 위한 언론법제와 광고 및 PR 전공자들을 위한 언론법제로 세분화하여 학부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맞춰 언론법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언론법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제공하는 학교들 중에도 세부전공에 맞춰 언론법제 과목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노던 켄터키 대학(Northern Kentucky University)과 오클라호마 주립대학(Oklahoma State University)이 일례라 하겠다(Ekstrand, 2007).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어 수업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는 2 ~ 3주에 걸쳐 다루는 등 다른 주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강의한다는 것을 뜻할 뿐 전문화된 과목이 아닌 다음에야 한 학기 내내 몇 분야만을 다룬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의 법제를 다루되 판례법 중심인 미국법의 특징에 따라 저널리즘에 관련된 판례들을 주로 논의하느냐 아니면 광고에 관련된 판례들을 예제로 활용하느냐로 차별화를 두는 정도라 하겠다. 그리고 같은 판례를 다룬다 할지라도, 만약 그 판례가 특정 기업체에 대한 언론의 탐사보도가 문제가 된 경우라면 언론의 입장에 중점을 두어 바라보느냐 아니면 기업의 대응 및 PR전략 입장에서 판례를 해석하느냐에서 차이를 두기도 한다(Ekstrand, 2007).

아무리 간략하게 다룬다고 해도 언론법제 관련 주제 모두를 한 학기 내에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번 불가피하게 몇 가지 주제 분야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고 학생들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넘어가도록 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선택은 때로 여타 과목을 가르칠 때와는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특정 언론법 분야를 다루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 학생들이 나중에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미비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일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 간략하게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2006년 가을학기에 언론법제 과목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정치 광고에 있어 기업체들이 갖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학기말 주제발표 분야로 선정해 놓은 뒤 수업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었다. 그런데 당시 필자의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 중 소규모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의 광고회사가 하와이 주 지역신문들에 게재한 정치 광고가 문제가 된 것이었다. 이 정치 광고는 당시 주 행정부가 해양자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

전공분야의 세분화와 새로운 법적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언론법제 과목에서  
가르칠 내용 계속 늘어나

며 해양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낚시행위만을 금지하는 법령을 운영하여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무시하고 있다며 “낚시의 미래는 당신의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11월 7일에 변화를 만듭시다(The future of fishing depends on your VOTE! Make a difference on NOVEMBER 7th)”라는 내용을 담아, 하와이 주 총선거(general election) 이틀 전에 지역신문들에 게재됐다. 문제는 이 광고의 하단에 “하와이를 걱정하는 낚시꾼들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Paid by Hawaii’s concerned fishermen and their ohana)”라고 광고게재자의 신원이 밝혀져 있었는데 이는 선거관련 정치광고 규제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우선은 하와이 주의 선거운동 자금운용 위원회(State of Hawaii Campaign Spending Commission)에 등록하지 않은 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광고게재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선거 다음 날인 2006년 11월 8일에 이 정치 광고에 대한 정식 고소가 이루어졌고 수사에 들어간 선거운동 자금운용 위원회는 낚시꾼들을 대변해서 광고 게재를 요청했던 필자 학생의 광고회사에 책임소재를 묻게 되었다. 다행히도 2007년 6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치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Wisconsin Right To Life, Inc.과 McCain v. Wisconsin Right to Life)을 내림에 따라, 하와이 주 선거운동 자금운용 위원회는 지난 11월 초에 1년여 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필자 학생의 광고회사가 게재한 정치 광고는 불법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1년여의 기간 동안 필자의 학생은 은행계좌에 소환영장이 발부되고 기존의 고용 경력들을 조사받

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1년여 동안 학생이 겪었을 불편 및 심리적 고통을 생각할 때 그리고 법이 최근에 바뀌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경제적 손실을 생각할 때 필자로서는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 2) 언론법제 과목에서 사용하는 교육방법

언론법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 관련 원칙과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방법 및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은 강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언론법제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의 성격상 전문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고 또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방대하여 많은 시간을 강의에 할애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법과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크라테스식 교수법(끊임없는 질문들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미리 수업 전에 내용을 숙지한 후 수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필자의 경우에는 매주 읽기과제를 내 준 후 해당 과제에 관련된 퀴즈 20문제를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풀게 하는 방식을 최근에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서를 미리 충분히 숙지한 후 수업에 임하게 되어 수업 시간에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강의 중간 중간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요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모의재판(mock trial)을 실시하기도 한다. 3~4명이 한 조가 되어 특정 판례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원고, 피고 그리고 법원의 입장을 각각 대변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수가 많은 강의의 경우 사용하기 힘든 방법이지만 필자의 경우 보통 한 과목에 20명 미만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주는 “모의 재판의 주”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법을 수업시간에 다룸과 동시에 간략한 모의재판을 진행하는데 단순히 교과서에 요약된 판결 내용만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도출된 배경 및 논리를 심도 있게 짚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필자는 학생들이 최신 언론법제 관련 뉴스를 찾아와서 매시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발표 과제는 언론법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 변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신 동향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언론법제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단순히 교과서에만 있는 정형화되고 고리타분한 규칙들이 아니라 실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살아있는 주제임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외에 학기말에는 개인별로 혹은 조별로 발표를 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 중에서 개인별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별 발표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그럼 언론법제 과목에서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앞서 서술한 교육 목표에 비취볼 때 평가방

법 역시 학생들의 이해도와 적용능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다. 또한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연관된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 용어의 정의나 주요 판례 그리고 각 분야의 법률을 숙지하는 것도 언론법제 과목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판례요약(case brief)이나 법령요약(statute summaries) 등을 과제로 제출하기도 하고 학기말 연구 발표 및 연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시험이 주요한 형태의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언론법제 과목에서 사용하는 시험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Henderson, 2006). 첫째는 단순 정의를 묻는 문제들로 예를 들어 “청원자(petitioner)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의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주요 법률 용어들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단답형 문제로 “서술하시오(describe)”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재판관할권이 쟁점이었던 판례 두 개를 예로 들어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해 서술하라”고 묻는 것이다. 이 역시 학생들이 주요 법률들을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 형태라 하겠다. 셋째는 서술형 문제인데 특정 분야의 주요 판례 3 ~ 4개를 나열한 뒤 이들을 “비교 및 대조하라(compare and contrast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 정의나 단답형 문제들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요하는 문제 형태라 하겠다. 넷째는 가상 판례 문제로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련의 사실 관계들을 제시한 후 법적 소송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유추 설명하라는 형태의 문제이다. 결론보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 과정이 더 중요하며 또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판례 및 법령들을 근거로 제시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형태이다. 하지만 법에 대한

미국 언론법제 분야는 여러 학과가  
각기 고유한 학문적 성격 살려  
표현 및 언론 자유 탐구하는 특징있어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을 요구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시험형태이므로 언론법제 과목의 교육 목표를 감안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의 평가 방법이라 하겠다.

### 3) 언론법제 전공자들을 위한 언론법제 교육

앞서 서술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언론법제 과목의 주제 및 교육 방법들로 언론학 전공자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언론학 전공자들 중 언론법제 전공자들이 추가적으로 받는 교육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언론법제를 세부 분야로 정하고 언론학 석·박사 공부를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하었는데 석사 첫 학기에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어 있었던 언론법제 과목을 수강한 후, 저널리즘대학 내에 개설된 언론법 세미나 과목들을 수강함과 동시에 정치학과와 법과대학에서 수업들을 수강하였다. 법과대학의 수업은 관련 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상세히 다룬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는데 특히 저작권법(Copyright Law)과 인터넷법(Cyber Law) 수업이 기억에 남고, 정치학과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 의사 결정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대법원(The U.S. Supreme Court)이라는 과목은 한 학기 내내 미국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 및 대법원의 의사결정과정을 탐구하면서 대법원 판사들이 법적 원칙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고유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기반을 두고 투표를 하며 상호 간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입장을 취한다는 시각에서 법원의 판례들 및 의사결정과정을 탐구하였는데 불편부당한 기관으로서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 크게 무게를 두고 있었

던 필자에게는 법원 역시 다른 가치체계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 전략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정치적인 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법과대학이나 정치학과 외에도 언론법제 관련 수업을 제공하는 곳은 역사학과가 있었다. 수정헌법 1조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짚어가면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가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어 왔는지 탐구하는 수업들이었다.

이처럼 미국 언론법제 분야는 법학 전공자들만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도 법적 문제를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한 연구 분야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각 전공자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 맞추어 아주 작은 부분만을 공부한다는 점에서 세분화된 학문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러 학과가 각기 고유한 학문적 성격을 살려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탐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언론학과에서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이해 및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원칙들을 공부하는 반면, 법과대학에서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 및 판례들을 숙지함으로써 실제 언론관련 법적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고객(client)을 대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고, 정치학과에서는 법원의 의사 결정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관련 판례들을 탐구하며, 역사학과에서는 언론법제의 변천과정을 역사연구의 한 분야로 선정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필자가 “언론법제” 전공이라고 말하면 “왜 변호사가 아니라 언론학 박사 학위 소지자가 법을 공부하느냐”는 질문을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흔히 받고는 하는데 이는 아직 한국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법조인들만의 분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인 듯하다.

물론 미국에서도 언론학 박사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법학박사 소지자가 언론학과에서 언론법제를 강의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언론법제 과목을 강의할 교수를 찾는 임용 공고가 날 경우, “언론학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법학 박사 소지자”라는 자격요건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언론학과 대학원과 법과대학이 공동으로 학위 과정을 개설, 두 분야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공동 학위과정(joint degree program)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양쪽 단과대학, 즉 언론대학원과 법과 대학의 입학조건을 동시에 충

족시켜 양쪽 단과대학에 동시에 합격해야 한다. <표 1>은 공동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들을 간략히 요약한 것인데, 지배적인 형태는 언론석사와 법학박사 공동 학위과정이다. 이는 5년 - 2년의 언론 석사과정과 3년의 법학 박사과정 - 에 걸쳐 두 분야의 학위를 따로 취득하는 대신 4년으로 꾸며진 공동학위 과정을 통해 언론석사와 법학박사(Juris Doctor: J.D.)를 동시에 취득하는 형태이다. 한편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은 언론석사와 법학석사 공동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미주리 대학은 언론석사·박사 및 법학석사·박사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공동학위 과정들을 개설하고 있다.

<표 1> 공동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들과 각 대학별 공동 학위과정(가나다순)

대 학	공 동 학 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저널리즘·매스컴 석사(M.A.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 법학박사(J.D.)
노스웨스턴 대학 (Northwestern University)	- 저널리즘 석사(M.S. in Journalism)/ 법학석사(Master of Legal Studies)
리전트 대학 (Regent University)	- 커뮤니케이션석사(M.A. in Communication)/ 법학박사(J.D.)
	- 저널리즘석사(M.A.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미주리 대학 (University of Missouri)	- 저널리즘석사(M.A. in Journalism)/ 법학석사(Master of Law in Dispute Resolution)
	- 저널리즘석사(M.A.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 저널리즘박사(Ph.D. in Journalism)/ 법학석사(Master of Law in Dispute Resolution)
	- 저널리즘박사(Ph.D.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시리큐스대학 (Syracuse University)	- 공공커뮤니케이션석사(M.S. in Public Communications)/법학박사(J.D.)
아이오와대학 (University of Iowa)	- 저널리즘석사(M.A.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 커뮤니케이션박사(Ph.D. in Communication Studies)/ 법학박사(J.D.)
인디애나대학 (Indiana University)	- 저널리즘석사(M.A.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 텔레커뮤니케이션석사(M.S. in Telecommunications)/법학박사(J.D.)
캔사스대학 (University of Kansas)	- 저널리즘석사(M.S.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콜럼비아대학 (Columbia University)	- 저널리즘석사(M.S.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플로리다대학 (University of Florida)	- 매스커뮤니케이션석사(M.A. in Mass Communication)/ 법학박사(J.D.)

\* M.A.(Master of Arts)/ M.S.(Master of Science)/ Ph.D. (Doctor of Philosophy)/ J.D.(Juris Doctor)

미국의 주요 언론학회들은  
산하에 언론법제 관련 연구 분과를 두고  
활발히 연구활동 펼쳐

4) 언론법제 전공자들의 연구 활동

지금까지는 대학에서의 수업을 중심으로 언론법제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석사 그리고 특히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는 언론법제 관련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그 성과물을 학회 및 학술지 발표를 통해 공유하는 것도 교육의 중요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언론법제를 강의하는 교수들 역시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서로 간의 연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언론학회 단체들인 저널리즘 및 매스컴 교육 학회(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이하 AEJMC라 지칭)와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이하 ICA라 지칭)는 각기 법과 제도 연구분과(Law and Policy Division)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커뮤니케이션 학회(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이하 NCA라 지칭)는 표현의 자유 연구분과(Freedom of Expression Division)와 커뮤니케이션과 법 연구분과(Division on Communication and the

Law)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회는 제출된 논문들을 3인의 심사위원들이 익명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통해 우수한 논문들을 뽑아 학회에서 공개 발표토록 하는데, 2007년 8월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AEJMC의 법과 제도 연구 분과의 논문 통과율(acceptance rate)은 29%에 불과했을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한 연구 분과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AEJMC의 법과 제도 연구 분과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법과 제도 (Communication Law and Policy:이하 CL&P라 지칭)라는 전문 학술지<sup>2)</sup>를 1년에 4번 발행하고 있으며 미디어 법 노트(Media Law Notes)라는 이름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이메일 리스트 서브(listserv)를 운영함으로써 언론법제 전공자들과 교육자들이 끊임없이 학술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언론법제 전공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연구 분야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히 지난 3년간 CL&P에 실린 논문들과 AEJMC 전국학술대회와 ICA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법과 제도 연구 분과의 논문들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표 2>에 요약되어 있

2)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이외의 언론법제 관련 주요 저널들의 명칭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 CommLaw Conspectus: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 Communications and the Law
-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 Entertainment Law Journal
-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 Journal of International Media & Entertainment law
- Journal of Media Law and Practice
- Media Law and Policy
- Michigan Telecommunications & Technology Law Review
- Telecommunications Policy
-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 Villanova spo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듯이 정부 관련 정보공개법, 지적재산권법 그리고 광고 및 상업관련 표현 관련 규제, 이 3가지 주제가 CL&P과 AEJMC 발표 논문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구 분야였고, ICA 발표논문들의 40% 이상은 무선통신, 인터넷 등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telecommunications) 관련 정책, 방송통신 융합관련 정책, 정보화 관련 정책(information policy) 등에 대한 논문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발표된 논문 주제는 방송규제 및 언론 소유 규제에 대한 것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였다. 또한 ICA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국 이외의 외국의 언론법제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상당수 발표되었는데 앞서 말한 통신관련 정책 분야 등에 대한 연구논문 67편 중 30편은 유럽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한 논문들이었다. 기타 주제에 포함된 논문들 46편 중 32편 역시 미국 이외의 사례를 소개한

논문들이었는데 한국의 언론법제에 대한 논문 5편, 중국의 언론정책에 대한 논문 5편, 유럽의 언론기관들의 자율규제 및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제에 대한 논문 14편 그리고 국제화 시대의 언론규제에 대한 논문 3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간략히 소개할 것은 각 학교별 언론법제 연구소 현황이다. 규모가 큰 대학들을 중심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언론 대학 내 부속기관 - 혹은 언론대학과 법과대학의 공동 부속기관 - 으로 언론법제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 <표 3>은 언론법제 연구소의 명칭 및 인터넷 주소를 표시한 것인데 완전한 목록은 아니지만 한국의 언론법제 연구자들 중에 미국의 언론법제 연구소 동향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보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표 2> 최근 3년(2005~2007년) 사이에 발표된 언론법제 관련 논문들의 주제별 편수

주 제 분 야	CL&P 게재	AEJMC 발표	ICA 발표
정부관련 정보공개법	8 (20.51%)	13 (15.66%)	3 [2] (1.82%)
지적재산권법	3 (7.69%)	14 [2] (16.87%)	15 [2] (9.09%)
방송규제 언론소유규제	2 (5.13%)	3 (3.61%)	27 [7] (16.36%)
텔레커뮤니케이션정책 및 정보화정책 관련	0	4 <sup>3)</sup> (4.82%)	67 [30] (40.61%)
광고 및 상업 관련 표현	4 [1] (10.26%)	4 (4.82%)	2 (1.21%)
명예훼손법	2 [1] (5.13%)	6 [2] (7.23%)	1 (0.61%)
취재원의명보장권	1 (2.56%)	7 [2] (8.43%)	0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	2 (5.13%)	11 (13.25%)	4 (2.42%)
학생언론	3 (7.69%)	2 (2.41%)	0
다른 여타주제들	14 (35.90%)	19 [2] (22.89%)	46 [32] (27.88%)
합 계	39 [2] (100.0%)	83 [8] (100.0%)	165 [73] (100.0%)

\* [ ]안의 숫자는 미국 이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다룬 논문들의 편수이다.

3) 이 4편의 논문은 모두 네트워크 중립성(net neutrality)에 관한 논문들이었다.

<표 3> 미국 대학들의 언론법제 연구소 목록 및 웹사이트 주소(알파벳순)

대학 단과대학	연구소명칭	웹사이트주소
Kent State University: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Media Law Center for Ethics and Access	<a href="http://jmc.kent.edu/cfp/cfp.htm">http://jmc.kent.edu/cfp/cfp.htm</a>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Communication Art and Sciences	Quello Center for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 Law	<a href="http://quello.msu.edu/">http://quello.msu.edu/</a>
New York Law School*	Media Center	<a href="http://www.nyls.edu/pages/107.asp">http://www.nyls.edu/pages/107.asp</a>
New York University:School of Law*	Brennan Center for Justice: Free Expression Policy Project	<a href="http://www.fepproject.org/">http://www.fepproject.org/</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Communications	Pennsylvania Center for the First Amendment	<a href="http://www.comm.psu.edu/first/index.html">http://www.comm.psu.edu/first/index.html</a>
Southwestern University: College of Law*	Donald E. Biederman Entertainment & Media Law Institute	<a href="http://www.swlaw.edu/academics/biederman">http://www.swlaw.edu/academics/biederman</a>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Law*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a href="http://cyberlaw.stanford.edu">http://cyberlaw.stanford.edu</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4)	Berkeley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	<a href="http://www.law.berkeley.edu/institutes/bclt/">http://www.law.berkeley.edu/institutes/bclt/</a>
University of Florida:College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s	Brechner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 href="http://brechner.org/">http://brechner.org/</a>
University of Minnesota: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ilha Center for the Study of Media Ethics and Law	<a href="http://www.silha.umn.edu/">http://www.silha.umn.edu/</a>
University of Missouri: School of Journalism	Freedom of Information Center	<a href="http://foi.missouri.edu/">http://foi.missouri.edu/</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 School of Law	Center for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CCLP)	<a href="http://cclp.usc.edu/">http://cclp.usc.edu/</a>

### 3.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을 위한 언론법제 관련 단체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마지막으로 현업 언론인들을 위한 언론법제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은 주제별로 열리는 워크숍에 참가하는 형태로 언론법제 관련 재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 일례로 대학들은 지역 언론인들을 위해 주 정부 문서 접근 관련법을 교육하는 워크숍을 주최하곤 한다 -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

고 있는 언론법제 관련 단체들이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을 위해 언론법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 중에 가장 활동이 왕성한 단체들 중의 하나는 1970년에 설립된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들의 위원회(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이하 RCFP라 지칭)이다. RCFP는 익명을 약속하고 취재에 임했던 기자들이 법원에 소환되어 정보원의 신원을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던 시기, 그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던 시기에 생겨났다. RCFP의 설립 기원은 익명 취

4) \*이 표시된 이들 5개 대학들은 언론학도가 아닌 법과대학이 단독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제 분야가 밀접하여 목록에 포함하였다.

재원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최근 미국 언론법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비관을 무마하기 위해 미 정보국(CIA) 비밀공작원의 신분을 누설한 것과 관련해서 익명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려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뉴욕타임즈 기자가 85일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것을 시작으로 취재원 비밀 보호법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부상. 기자들에게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호할 특권을 주는 연방 차원의 법률(federal shield law)을 제정하는 문제를 놓고 현재 미국회의사당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기 때문이다.

RCFP는 언론관련 법률 소식을 수집, 분류하여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보도하는 잡지를 최초로 발간하였고, 언론법제 관련 책자들을 끊임없이 발간해 왔는데 이러한 책자들은 교과서 및 학술지에서 다루는 내용들과는 달리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들을 손쉽게 설명하고 있는 가이드(guides) 형태의 책자들이다. 예를 들어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 문서 공개를 요청하려면 어떤 편지를 보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정부가 문서 공개를 거절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책자가 있다.

RCFP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로는 “법률 변호 긴급선(Legal Defense Hotline)”이 있는데 정부의 회의나 기록 공개와 관련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언론인과 언론 관련 변호사들이 언제나 전화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RCFP의 변호사들이 해당 지역의 변호사를 찾는 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기자들이 정부와 어떻게 직접 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RCFP가 주체가 되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청구하기도 하

는데, 닉슨 대통령이 보관하고 있던 백악관 문서 및 음성 녹음테이프 공개에 관한 법률 소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법제 관련 법률 소송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창립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RCFP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한다(RCFP, n.d.).

1974년에 설립된 학생 언론 법 센터(Student Press Law Center: 이하 SPLC라 지칭)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언론인들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RCFP의 연관 단체이지만 학생 언론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개별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SPLC는 수정헌법 1조에 내재된 권리와 책임에 대해 학생 언론인들을 교육하고, 학교에서 행해지는 검열에 맞서 중요한 사안들을 보도하고자 하는 학생 언론인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SPLC는 무료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의 교육 책자를 학생 언론인들을 위해 보급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과 지역 변호사들을 연결해 주는 변호사 소개 망(Attorney Referral Network)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2,500여 명의 학생 언론인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SPLC에 연락을 취해온다고 한다(SPLC, n.d.).

전문 기자 협회(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는 법률 변호 기금(Legal Defense Fund) 운영을 통해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자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있는데 주로 정부 기록이나 회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소송들을 개시하거나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언론법 연구 센터(Media Law Research Center)는 프라이버시 관련법, 명예훼손법, 공표권(right of publicity) 관련 법 등을 주로 다루며 이들 분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관련 소송 현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단체인데 전신은 명예훼손 변호 센터(Libel Defense

현업 언론인들을 위해  
언론법제 정보 및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여럿 활동해

Center)였다. 마지막으로, 수정헌법 1조 센터(First Amendment Center)는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자유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표현 및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에 청원할 자유에 대해서도 함께 다룬다는 특징이 있으며 매일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는 웹사이트(<http://www.firstamendmentcenter.org/>)는 수정헌법 1조 관련 최신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정보원이 되고 있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미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 현황과 현업 언론인들을 위한 언론법제 단체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다. 언론법제 관련 교육 역시 미국의 실용주의 경향을 반영하여 언론학 전공 학생들이 차후 언론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및 교수법이 꾸려져 있고, 현업 언론인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용성이 미국 언론법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법제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민주사회의 참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적절히 행사하며 더 나아가 그 자유들에 내재된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언론법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하겠다.

필자가 미국에 와서 언론법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1791년에 승인된 수정헌법 1조에 담긴 간략한 문구 - 국회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침

해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the press...") - 에 대한 미국인들의 존중이었다. 200년이 넘도록 수정헌법 1조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며 그와 더불어 그 속에 내재된 가치를 존중하는 미국의 언론법제 교육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현실 속의 강력하고도 살아있는 힘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

#### 〈참고 문헌〉

- 염규호(1998). 미국 대학의 언론법 교육현황. 언론중재. 가을호.
- Ekstrand, V. S. (2007). The challenges of teaching media law in one semester. *Media Law Notes*, 35(1), 3-5.
-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Wisconsin Right To Life, Inc. (docket #: 05-969) (2007).
- Henderson, J. (2006). Law and policy. In W. G. Christ (Ed.), *Assessing Media Education: A Resource Handbook for Educators and Administrators* (pp. 53-82).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Marler, C. (1990). The legists. In Wm. D. Sloan (Ed.), *Makers of the Media Mind: Journalism Educators and Their Ideas* (pp. 178-225).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McCain v. Wisconsin Right to Life (docket #: 06-970) (2007).
- Student Press Law Center (n.d.). "About the Student Press Law Center." Retrieved November 23, 2007, from <http://www.splc.org/default.asp>
- The Accrediting Council on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2005). "ACEJMC accrediting standards." Retrieved November 11, 2007, from <http://www2.ku.edu/~acejmc/PROGRAM/STANDARDS.SHTML#std2>
- 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n.d.). "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A short history." Retrieved November 23, 2007, from <http://www.rcfp.org/about.html>